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22970 판결 [부속물매수청구등]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9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단3648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49,140,400원 및 그중 42,640,000원에 대하여2016. 5.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판사 권형관판사 권비룡